Java로 구현한 Diff

Test1

|  |  |
| --- | --- |
| From file | To file(2,363 바이트) |
| ‘증명서류의 제출생략’일부 개정(안)  1. 개정  출원인 등이 증명서류의 명칭을 현행 법령상 용어로 대체하고, 출원인 등의 동의 여부에 따른 증명서류의 확인 절차를 신설하는 등 출원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2. 주요내용  가. 증명서류 제출생략에 관한 근거 법령 법조문 개정  o 출원인 등의 증명서류 제출생략에 관한 근거 규정 중 실용신안법 시행규칙과 상표법 시행규칙의 해당 조항을 수정(제1조)  나. 기존 증명서류의 명칭을 현행 법령 용어로 대체 추가확장  o “주민등록등(초)본”을 주민등록법(법률 제10733호)의 “주민등록표등(초)본”으로, “법인등기부등본”을 부동산등기규칙(대법원 규칙 제2356호)의 “법인등기사항증명서”로, “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원”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(보건복지부령 제108호)의 “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”로 대체(제2조, 제4조)  다. 출원인 등의 동의 여부에 따른 확인 절차 신설  o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증명서류를 확인하는 절차를 출원인의 동의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규정(제7조)  라. 구법상의 용어 및 중복되는 용어를 수정  o “행정정보공유시스템”을 전자정부법(법률 제10580호)의 “행정정보의 공동이용”으로, “특허 등에 관한 절차를 밟는자”를 “출원인 등”으로 수정(제2조, 제4조~제6조) | ‘증명서류의 제출생략’일부 개정(안)  1. 개정이유  출원인 등이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증명서류의 명칭을 현행 법령상 용어로 대체하고, 출원인 등의 동의 여부에 따른 증명서류의 확인 절차를 신설하는 등 출원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2. 주요내용  가. 증명서류 제출생략에 관한 근거 법령 개정  o 출원인 등의 증명서류 제출생략에 관한 근거 규정 중 실용신안법 시행규칙과 상표법 시행규칙의 해당 조항을 수정(제1조)  나. 기존 증명서류의 명칭을 현행 법령 용어로 대체  o “주민등록등(초)본”을 주민등록법(법률 제10733호)의 “주민등록표등(초)본”으로, “법인등기부등본”을 부동산등기규칙(대법원 규칙 제2356호)의 “법인등기사항증명서”로, “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원”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(보건복지부령 제108호)의 “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”로 대체(제2조, 제4조)  다. 출원인 등의 동의 여부에 따른 증명서류 확인 절차 신설  o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증명서류를 확인하는 절차를 출원인의 동의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규정(제7조)  라. 구법상의 용어 및 중복되는 용어를 수정  o “행정정보공유시스템”을 전자정부법(법률 제10580호)의 “행정정보의 공동이용”으로, “특허 등에 관한 절차를 밟는자”를 “출원인 등”으로 수정(제2조, 제4조~제6조) |

|  |
| --- |
| diff\_print\_barsket() |
| ﻿‘증명서류의 제출생략’일부 개정(안)  1. 개정[[이유]]  출원인 등이[[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]] 증명서류의 명칭을 현행 법령상 용어로 대체하고, 출원인 등의 동의 여부에 따른 증명서류의 확인 절차를 신설하는 등 출원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2. 주요내용  가. 증명서류 제출생략에 관한 근거 법령<< 법조문>> 개정  o 출원인 등의 증명서류 제출생략에 관한 근거 규정 중 실용신안법 시행규칙과 상표법 시행규칙의 해당 조항을 수정(제1조)  나. 기존 증명서류의 명칭을 현행 법령 용어로 대체<< 추가확장>>  o “주민등록등(초)본”을 주민등록법(법률 제10733호)의 “주민등록표등(초)본”으로, “법인등기부등본”을 부동산등기규칙(대법원 규칙 제2356호)의 “법인등기사항증명서”로, “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원”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(보건복지부령 제108호)의 “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”로 대체(제2조, 제4조)  다. 출원인 등의 동의 여부에 따른 [[증명서류 ]]확인 절차 신설  o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증명서류를 확인하는 절차를 출원인의 동의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규정(제7조)  라. 구법상의 용어 및 중복되는 용어를 수정  o “행정정보공유시스템”을 전자정부법(법률 제10580호)의 “행정정보의 공동이용”으로, “특허 등에 관한 절차를 밟는자”를 “출원인 등”으로 수정(제2조, 제4조~제6조) |

|  |
| --- |
| diff\_print\_summary\_and\_list |
| Diff Summary  Insert : 3  Delete : 2  Insert List  [1]: 이유  [2]: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 [3]: 증명서류  Delete List  [1]: 법조문  [2]: 추가확장 |